

일본	9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	--------------

I	수입제도 변경사항
---	-----------

1. 라벨링 일반

-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첨가물 표시에 관한 소폭 개정 안내
 - 산화방지제 및 곰팡이 방지제 관련 표시 사항 변경(8.15)
 - 유아용규격식품에 관한 표시사항 변경(9.20)

※ 별첨 신구대조표 1,2 참조

II	수입제도 현안
----	---------

1. 검역 불합격, 폐기, 반송사례

- 8, 9월 식품위생법상 위반사례

	품명	제 조자(화주)	내 용	수입자명	조치상황
1	고추가루	Y사	기준치초과 (지페노코나졸 0.02ppm 검출)	(유)***	폐기, 회수 등 조치 (전량보관)
2	용기포장가압가열살균식품 (전복죽)	D사	성분규격부적합 (발육가능성미생물 양성)	(주)K**	폐기, 반송조치 (일부판매, 잔여보관중)
3	용기포장가압가열살균식품 (야채죽)	D사	성분규격부적합 (발육할 수 있는 미생물 양성)	(주)K**	전량판매
4	활넛치	S사	성분규격부적합 (엔로프로키사신 0.01ppm검출)	(주)M*****	폐기, 반송 지시 (조사중)
5	분말청량음료 (GINGER TEA)	D사	성분규격부적합 (대장균군 양성)	S****	폐기, 반송 지시 (전량 보관)
6	인스턴트커피	N사	사용기준부적합 (스테아로일유산나 트륨)0.5g/kg 검출	(주)S*	폐기, 반송 지시 (전량 보관)
7	생들깨	B사	기준치초과 (인도키사카르부0.02 ppm, 에토프로호스 0.14ppm검출)	(주)T***	폐기, 반송조치 (일부폐기, 잔여보관중)
8	생식용냉동어패류 (참치)	J사	성분규격부적합 (대장균군 양성)	(유)T****	폐기, 반송 지시 (전량 보관)
9	가열후섭취냉동식품	D사	성분규격부적합 (대장균군 양성)	N*****	폐기, 반송 지시 (전량 보관)

\\

- 고춧가루 잔류농약 위반사례로 일본의 포지티브리스트제도에 근거한 잔류농약성분의 기준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전검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위반이 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전복죽, 분말청량음료 등은 대부분 정식수출용 물품이 아닌 한국 내 유통제품을 수출한 경우의 병행수입품으로 현지국 위생규격에 맞춘 준관리가 필요하며, 무더운 여름철 온도관리 미숙으로 보이는 세균위반사례가 발생
 -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인해 미생물균이 발생 증식할 위험성도 높아 온도관리 등 각별한 주의 필요
 - 국내유통제품을 수집하여 수출시 이미 유통기한이 일정시간이 지난 경우가 있으므로 잔존기간이 충분한 상태에서 수출되도록 사전 확인 필요
- 활넛치 제품의 경우 항생제 검출로 위반된 사례로, 현재 일본측에서도 모니터링 검사가 강화되고 있어 향후 추가 위반사례 발생 가능성이 높아 더욱 주의가 요구됨
- 생들깨의 경우 잔류농약이 검출된 사례로 일본의 기준치에 맞추어 반드시 사전잔류농약 검사 후 수출하는 것이 필요

<별첨 1> 산화방지제 및 곰팡이 방지제 관련 표시 사항 변경 신구문 대조표

식품위생법을 기반으로 한 첨가물표시등에 관하여(신구대조표)

개정 후 (신)			개정전 (구)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첨가물의 표시등에 대하여(2010년 10월20일소식표 제 377호)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첨가물의 표시등에 대하여(2010년 10월20일소식표 제 377호)		
(생략)			(생략)		
1. 제도의 개요			2. 제도의 개요		
(1) 식품에 관련한 표시에 대하여			(1) 식품에 관련한 표시에 대하여		
아 ~ 카 (생략)			아 ~ 카 (생략)		
키 부령 제 1 제 1항 제 11호 하에 기재된 살구, 앵두, 감귤류, 키위, 석류, 자두, 서양배, 승도복숭아, 바나나, 비파, 마르멜로, 복숭아 및 사과에 대해서는 <u>아족시스트로빈</u> , <u>이마잘릴</u> , <u>오르토펜페놀</u> , <u>오르토펜페놀 나트륨</u> , <u>지페닐</u> , <u>치아벤다졸</u> , <u>피리메타닐</u> 혹은 <u>후루디옥소닐</u> 을 포함한 경우에는, 물질명 및 용도명을 표시하여, 그밖의 표시사항에 대해서는표시를 생략할수있는 것일 것.			키 부령 제 1 제 1항 제 11호 하에 기재된 살구, 앵두, 감귤류, 키위, 석류, 자두, 서양배, 승도복숭아, 바나나, 비파, 마르멜로, 복숭아 및 사과에 대해서는 <u>오르토펜페놀</u> , <u>오르토펜페놀 나트륨</u> , <u>지페닐</u> , <u>치아벤다졸</u> , <u>이마잘릴</u> , <u>후루디옥소닐</u> 혹은 <u>아족시스트로빈</u> 을 포함한 경우에는, 물질명 및 용도명을 표시하여, 그밖의 표시사항에 대해서는표시를 생략할수있는 것일 것.		
(2) (생략)			(2) (생략)		
2. 운용상의 유의사항 (생략)			2. 운용상의 유의사항 (생략)		
별지 1 (생략)			별지 1 (생략)		
별지 2 (생략)			별지 2 (생략)		
별지 3 규칙별표제 1에 기재된 첨가물내의 용도명 병기를 요구하는 것의 예시			별지 3 규칙별표제 1에 기재된 첨가물내의 용도명 병기를 요구하는 것의 예시		
1 ~ 2 (생략)			1 ~ 2 (생략)		
5	산화방지제	(생략) dl- α -토코페롤 <u>아류산나트륨</u> 차아류산나트륨 (생략)	5	산화방지제	(생략) dl- α -토코페롤 <u>아류산나트륨</u> 차아류산나트륨 (생략)
6 ~ 7 (생략)			6 ~ 7 (생략)		
8	곰팡이방지제 및 세균방지제	(생략) 지페닐 <u>피리메타닐</u> 후루디옥소닐	8	곰팡이방지제 및 세균방지제	(생략) 지페닐 후루디옥소닐

별지 4

각 일괄명의 정의 및 원조첨가물의 범위

1 ~ 6 (생략)

7 향료

(1) ~ (2) (생략)

(3) 첨가물의 범위 이하의 첨가물을 향료로서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생략)

2 - 에틸피라진

3 - 에틸피라진

2 - 에틸 - 3 - 메틸피라진

8 ~ 14 (생략)

별지 5 (생략)

별지 6

날개로 판매되는 것 등으로 판매되는 식품내에서 첨가물의 표시를 요구하는 첨가물일람

1 곰팡이 방지 및 세균 방지제

(생략)

· 사이어벤더졸

· 프리메타닐

· 후루디옥소닐

2 (생략)

별첨 1~ 3 [생략]

별지 4

각 일괄명의 정의 및 원조첨가물의 범위

1 ~ 6 (생략)

7 향료

(1) ~ (2) (생략)

(3) 첨가물의 범위 이하의 첨가물을 향료로서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생략)

2 - 에틸피라진

2 - 에틸 - 3 - 메틸피라진

8 ~ 14 (생략)

별지 5 (생략)

별지 6

날개로 판매되는 것 등으로 판매되는 식품내에서 첨가물의 표시를 요구하는 첨가물일람

1 곰팡이 방지 및 세균 방지제

(생략)

· 사이어벤더졸

· 후루디옥소닐

2 (생략)

별첨 1~ 3 [생략]

<별첨 2> 유아용규격적용식품 관련 표시 사항 변경 신구문 대조표

식품위생법을 기반으로 한 첨가물표시등에 관하여(신구대조표)

개정 후 (신)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첨가물의 표시등에 대하여(2012년 2월 24일 소식표 제 46호)

(생략)

1 (생략)

2 각기재사항

(1) ~ (5) (생략)

(6) 그 밖의 표시사항

①~②⑩ (생략)

②⑪ 유아용규격적용식품의 표시

유아용규격적용식품인 것의 표시는 원칙적으로는 「유아용규격적용식품」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지만, 「본래의 상품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한)유아용식품의 규격기준이 적용된 식품입니다.」, 「유아용식품의 규격기준이 적용된 식품입니다.」, 「유아용규격적용」 등과 함께 표시하여도 지장없습니다.

별첨 2 (생략)

별표 1

표시의 기준 일람표

표시해야되는사항	명칭	소비기한 또는 상 미기한과 같은 의 미의 문 자가 씌 워진 연 월일※6	제 조 소 또는 가 공 소 의 소 재 지 및 제조 자 또는 가 공 자 의 이름	(생략)	보 건 기 능 식 품 인 것 등	유아용규격적용 식품인 것
1 마가린	○	○	○			
13 보건기능식품	○	○	○			
14 첨가물	○	○※4	○			

※1 ~

개정전 (구)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첨가물의 표시등에 대하여(2012년 2월 24일 소식표 제 46호)

(생략)

1 (생략)

2 각기재사항

(1) ~ (5) (생략)

(6) 그 밖의 표시사항

①~②⑩ (생략)

별첨 2 (생략)

별표 1

표시의 기준 일람표

표시해야되는사항	명칭	소비기한 또는 상 미기한과 같은 의 미의 문 자가 씌 워진 연 월일※6	제 조 소 또는 가 공 소 의 소 재 지 및 제조 자 또는 가 공 자 의 이름	(생략)	보 건 기 능 식 품 인 것 등
1 마가린	○	○	○		
13 보건기능식품	○	○	○		
14 첨가물	○	○※4	○		

※1 ~

※38 (생략)

※39 「알레르기 물질을 포함한 식품에 관한 표시에 대하여」 (2013년 9월 20일 소식표 제 257호) 별첨 1에 근거하여 표시하는 것.

※40 ~ ※44 (생략)

※45 일반소비자가 그 표시내용등에 의해 유아(1세미만)을 향해 식품인 것으로 인식하는 가능성이 높은 것을 대상으로함. 단, (미네랄워터류)물만을 원료로 하는 청량음료라 한다.), 원료에 차를 포함한 청량음료수, 음용에 역할을 하는 차(녹차 (다엽차, 옥로, 엽차, 현미차)등, 차나무를 원료로한, 차잎을 발효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음료수의 규격이 적용 되기 때문에, 일반소비자가 그 표시내용등에 의해 유아(1세미만)에게 식품이라고 인식하는 가능성이 높을지라도, 유아용의 규격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별표 2 (생략)

별표 3 (생략)

양식 제 1 호 ~ 양식 제 3호 (생략)

※38 (생략)

※39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및 우유 및 유제품의 성분 규격등에 관하 ㄴ후생노동성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등의 시행에 대하여」 (2000년 3월 15일 붙인 식품발 제 79호 후생노동성령 의약국 식품보건부장 통지) 제2의 2에 근거하여 표시하는 것.

※40 ~ ※44 (생략)

※45

별표 2 (생략)

별표 3 (생략)

양식 제 1 호 ~ 양식 제 3호 (생략)